

★ ◎

더불어사는 화살기관리양 **성동**

문서번호	사회복지과-3078
결재일자	2015.2.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생활보장팀장	사회복지과장	주민생활국장	
조성희	신성희	남강우	02/02 박기웅	
협조				

**2015년도  
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추진계획**



**성 동 구**

**【사회복지과】**

# 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구 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전 문 가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종 앙 부 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서 울 시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/ul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홍 보 제 목 :</li> <li>● 중점 홍보사항 - -</li> </ul>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# - 적정의료이용과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-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추진계획

질병·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지원, **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**

## I 추진근거

### ■ 법적근거: 의료급여법 제5조의 2(사례관리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■ 2015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안내

## II 추진방향

-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
-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발생 최소화
- 보건·복지·의료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
-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적정의료이용 도모

### III 일반 현황

#### ■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(2014. 12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계	1 종						2 종	
	국민기초	입양아동	국가유공자	광주민주화	북한이탈	군입대자 등기타	국민기초	군입대자
6,066	3,366	17	261	26	61	220	2,075	40

#### ■ 의료급여수급권자 연령별 현황(2014. 12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계	0세-39세	40세-49세	50세-59세	60세-69세	70세-79세	80세이상
6,066	1,812	886	1,024	784	1,052	508

#### ■ 의료급여수급권자 질환군별 365일 초과자 현황(2014. 12월말 기준)

(단위: 명)

계	고시질환	기타질환	희귀난치질환	중증등록질환
1,470	640	766	27	37

### IV 세부추진계획

#### ■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역 유형 및 관리 인원

○ 유형: 성동구, 외래 고위험지역

(상대적으로 신규 의료수급권자 많고, 외래이용 고위험군이 많은 지역)

○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인원

지역 구분	(A)장기입원자	(B)고위험군	집중관리군	신규수급권자	총계
외래 고위험	5~15명	75~85명	10명	전수관리 (200명)	300명

※ (A)+(B) 총합 90명 관리 (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침)

## 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

- 관리 대상: 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재 취득자
- 관리 기간: 1개월
- 수행 방법: 서신발송(1회이상), 전화(필요시), 집합교육(반기별 1회이상)
- 내 용
  -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도 등 안내
  -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정 의료이용을 하도록 지원

## ■ 고위험군 사례관리

- 관리 대상: 질병대비 과다이용자로 의료쇼핑, 비합리적 의료이용, 약물과다,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
- 대상자 선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대상자 및 보장기관 자체발굴
- 관리 기간: 3개월
- 수행방법: 개별 방문 및 전화 상담, 서신(안내문) 발송, 자원연계
- 내 용
  - 요구사정영역에 따라 대상자별 목표를 설정하여 중재
  - 대상자별 문제에 따른 상담, 교육 등 지지서비스 및 자원연계
  - 의료급여제도 이해, 합리적 의료이용, 질병관리능력향상,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

## ■ 집중관리군 사례관리

- 관리 대상: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의료이용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 관리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
  -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의 질병대비 부적정과다의료이용자 중 상위 30% 이내인 자
- 관리 기간: 연중관리(12월 중 종결)

## ■ 장기입원 사례관리

### ○ 목 적

-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 외래이용 전환,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자원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
-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적정의료이용을 도모 및 재정안정화 기여

### ○ 대상자 선정 기준

- 장기입원자(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자)
- 부적정 입원자(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, 숙식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등)
- 장기입원자 및 부적정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

### ○ 개입기간

- 기관: 연중실시(1월~12월)
- 개인: 6개월

### ○ 수행방법: 정보 및 자료제공, 공문 발송, 서신, 전화, 방문 교육, 자원연계 및 의뢰 등

### ○ 상담관리내용

- 적정 장기입원인 경우: 주치의와 면담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
- 부적정 장기입원인 경우: 퇴원 유도하면서 필요한 자원연계
  - ▶ 장기요양 대상: 재가서비스 연계 등 해당 자원연계
  - ▶ 입원비 관련: 긴급의료비지원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연계
  - ▶ 자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: 시설입소 연계
-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
  - ▶ 장기입원자 자료제공 협조 요청 및 방문교육, 필요시 간담회 개최

### ○ 장기입원 사례관리-심사연계

- 목 적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
- 연계대상: 사례관리 중 수급자 측면 사유 외에 병원의 협조가 안되어 퇴원 어려운 대상자 등
- 연계방법: 의뢰서식에 의거 매월 23일까지 시·도 제출

## ■ 대상자별 목표관리 및 세부일정

### ○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

분 류	사례관리 기 간	목표관리 횟수			
		방문	전화	서신	집합교육
장기입원자	6개월	2회	6회 이상	수시	-
고위험군	3개월	2회	4회 이상		
집중관리군	12개월	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례관리 기법 적용			
신규의료급여 수급자(전체)	1개월	-	필요시 전화	1회이상	반기별 1회이상

### ○ 사례관리 세부 일정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업 무 명	연간계획 및 대상자 선 정	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	분 기 대 상 자 선 정	집 합 교 육, 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	분 기 대 상 자 선 정	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	집 합 교 육, 분 기 대 상 자 선 정	사 례 관 리 수 행	사 례 관 리 수 행
사 례 관 리	고위험군 (75~ 85명/연)	20명		20명			20명			20명		
	집 중 관 리 군 (10명)	10명										
	신 규 대 상 자 관 리 (200명)	18명	19명	19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	18명
	장 기 입 원 자 (5~15명)	5~15명(연별 적정배정 관리)										
건 강 정 보 지 및 안 내 문	고위험군 집 중 관 리 군	발송		발송			발송			발송		
	신규군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	발송
	연 장 승 인 대 상	발송		발송			발송			발송		
교 육	세부계획 수립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테이핑요법(특화사업)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지원예정</li> <li>- 신규수급자 제도 교육 연2회 실시(집합교육)</li> <li>-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및 회의 등 참석</li> </ul>									

### III

## 기 대 효 과

- 수급권자의 건강악화 요인인 약물남용, 의료쇼핑 등의 행태변화 및 적정 의료급여 이용 유도
-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이익 방지
- 적정 의료이용 형태 변화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도모

### IV

## 행 정 사 항

- 사례관리 대상자의 기초조사서 및 수행내용 등을 행복e음에 입력 및 공단 전송
- 동주민센터, 의료기관, 보건소, 복지관 등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